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박 선 이 *

목 차

1. 들어가며
2. 肅宗·英祖代 과거제의 문제와 개선 노력
3.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한 논의와 쟁점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후기 科擧制에서 肅宗·英祖代 科擧制의 推移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한 논의와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고찰하여 당대 科文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을 밝히고 그 推移를 규명한 글이다.

먼저 肅宗·英祖代 科擧制의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은 숙종 대부터 과거 시험의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科場 관리의 부실 및 과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폐해가 극심해졌다. 특히 숙종 대에는 庭試가 자주 시행되면서 表文 작성에 유리한 서술 유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한편, 表文의 빈번한 출제로 인해 응시자들이 科文 관련 類抄와 儷文選集類의 학습에 몰두하여 표절하고 답습하는 폐단이 심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종 대와 영조 대에는 과거제와 관련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일정 부분은 科擧事目에도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肅宗·英祖代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련한 논의와 그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크게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과 사륙문의 애호와 科表 위주의 선발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19S1A5C2A02082732), 2021년 7월 17일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조선시대 교육·시험제도와 한문학」의 기획주제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수료 / E-mail : dudu0218@naver.com

인한 논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 후기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은 문제정책이 이루어졌던 정조 대가 아니라 숙종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영조 대를 거쳐 정조 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肅宗·英祖代에는 科文의 程式에 맞지 않는 試券을 작성하거나 科文의 문체에 맞지 않는 용어와 語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科擧事目에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科文의 격식과 문체를 바로잡고 응시자의 기호에 따라 기괴한 작법과 용어를 쓰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科文의 격식과 문체 변화 역시 개성적이고 신기함을 추구했던 조선 후기 文風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그러므로 科文의 정식과 격식을 위배한 응시자를 처벌하고 이러한 응시자를 선발한 試官을 처벌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別試를 대체한 庭試 시행의 확대는 제도상의 변화 뿐 아니라 합격자의 선발 방식과 科文 문체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숙종 대부터 科文에서 表文을 중시하고 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로 인해 과거를 준비하는 응시자 사이에서 表文의 학습이 중시되었으며, 儷文選集類에 대한 수요와 편찬이 확대되었다. 애초에 表文 위주의 선발은 문장에 능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표절과 모방의 답습 등 表文의 애호와 중시로 인한 폐단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科擧制의 변화가 단순히 제도상의 변화와 머물지 않고 科文의 문체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한다.

주제어: 肅宗, 英祖, 科擧, 科文, 科表

1. 들어가며

이 글은 조선 후기 科擧制에서 肅宗·英祖代 科擧制의 推移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한 논의와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고찰하여 당대 科文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을 밝히고 그 推移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종 대 이후 科弊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조선 전기부터

인재를 선발하는 수단이자 국가를 지탱하던 근간이 되었던 과거제는 점점 더 그 기능을 상실해갔다. 과거제에서 실제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과목이었던 科文과 관련한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당대 文風의 변화가 科文의 程式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가 후대까지 지속되면서 정조 대에는 기존 과거제의 폐단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존의 文風을 바로잡고 국가적 차원에서 문체의 典範을 제시한 문체정책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정조 대에 주목하여 정조의 문체정책이 시행되었던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科文의 문체 변화와 그 양상을 상세히 조망하였다.¹⁾ 물론 조선 후기로 보자면 정조 대에 당대의 文風과 科文의 문체 변화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科文의 문체 변화와 그에 대한 논란은 정조 대에만 국한되었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숙종 대와 영조 대부터 險字僻語를 사용한 科文이 실제 科場에서 試券으로 종종 제출되었으며, 科文의 程式을 지키지 않고 격식에 위배되는 試券이 상위권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科文에 險字僻語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 격식을 준수하지 않은 試券의 작성자와 담당 試官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科文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科擧事目에 해당 조항을 마련하여 반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이후 정조 대에 이르러 과거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시행되는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 숙종 대와 영조 대부터 당대 과거제와 科文과 관련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들이 정조 대에 시행되었던 과거제의 정비와

1) 김성진(1993).

科文과 관련한 문체 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에 肅宗·英祖代 과거제의 흐름 및 科文과 관련하여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肅宗·英祖代 과거제를 중심으로 당대 과거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등 관찬 역사서와 개인 문집에 수록된 당대 科文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중심으로 肅宗·英祖代 과거제의 흐름과 科文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肅宗·英祖代 과거제와 科文의推移와 그 양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후대 정조 대 과거제 정비 및 科文과 관련한 문체정책과의 관련성을 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肅宗·英祖代 과거제의 문제와 개선 노력

1) 庭試의 증가와 表文 위주의 출제

과거는 고려 광종 이후 조선 후기까지 인재를 선발하던 국가제도로 단순히 인재 선발 제도의 기능 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문화·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과거가 국가의 운영과 인재 선발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였지만 과거의 시행과 인재 선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대별로 크고 작은 폐단이 늘 존재하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 조선 후기 과거제 운영의 변화와 그 실상을 밝힌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과거제 운영의 폐단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및 운영의 정비를 상세히 논하였다.²⁾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의

2) 박현순(2014).

변화가 실제 科文의 程式과 문체의 변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또 그 실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필자가 조선 후기 과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과거와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가 제도적인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科文의 程式과 문체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肅宗 · 英祖代를 중심으로 과거제의 변화가 科文의 程式과 문체의 변화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과거제의 변화 양상과 관련한 사항을 요약 · 정리하고, 조선 후기 과거제의 변화 추이와 운영상의 폐단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실제적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과거 시행의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별시의 시행이 점차 줄어들고 庭試를 자주 시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庭試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別試와 式年試 등에 비해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급제여부가 판가름 나고 다른 시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시간과 재정상의 이유로 庭試의 시행을 선호하였다.³⁾

특히 숙종 대에 이르러 庭試가 자주 시행되면서 即日放榜하는 시험의 특성상 한 번의 시험으로 실질적인 인재를 가려낼 수 있는 문제라 여겨졌던 表文의 출제 빈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숙종 대에 과거 시험 시행 횟수가 증가되고 庭試에서 表文 위주의 선발방식이 지속되면서 과거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인재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하들은 과거 시험의 시행 횟수를 대폭 줄이고 과거 시험에서 表文 위주의 출제 경향을 지양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다음 南九萬(1629~1711)의 언급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박현순(2014), 77~80면.

과거를 자주 보는 것이 當宁과 같은 적이 없었고, 文才가 뛰어난 것도 오늘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鞠獄의 文案을 작성하는 데도 여간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주상께서 오로지 駢儷文만 숭상하시므로, 講讀을 익히지 않았던 자들도 요행을 바라고 나오니, 이것이 인재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武士의 試射에도 直赴의 科가 더욱 많아져서 활을 잡을 줄도 모르는 자가 모두 응시를 하고 있으니, 文武의 과거를 모두 드물게 하소서⁴⁾

위의 인용문은 1694년(숙종20)에 숙종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쓸 만한 인재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을 때, 南九萬이 개진한 내용이다. 南九萬은 당시 자주 과거 시험을 시행하고 文才가 뛰어난 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원인은 숙종이 사료문을 숭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간언하였다. 아울러 숙종이 사료문만을 숭상하기 때문에 講讀에 힘쓰지 않는 자들도 요행수로 합격하기를 기대하며 응시하고 무과 역시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으므로 문·무과의 시행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인재를 얻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南九萬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숙종 대 말기까지 이러한 폐단은 지속되었다. 일례로 숙종 44년(1718)에 柳復明(1685~1760)이 時弊 20여 조목에 관련하여 올린 상소에서 당대 科文의 폐단과 관련한 조항에서도 여전히 과거 시행 횟수의 증가와 表文 위주의 선발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과거의 시행횟수를 줄이고 表文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을 정지할 것을 건의하였다.⁵⁾

4) 『肅宗實錄』 20年 閏5月 24日. “九萬曰‘科舉之數, 無如當宁, 而文才乏絕, 亦無如今日. 鞠獄文案之成, 亦患艱難, 可慨也. 自上專尚儷文, 不勉講讀者, 亦冀僥倖, 此所以無人才耳. 武士試射, 直赴之科尤多, 不知操弓者, 皆爲之, 文武俱宜罕其試.’”

5) 『肅宗實錄』 44年 閏8月 3日. “試士之文, 以表爲先, 故剽竊成篇, 僥倖被選, 便爲科場中捷徑, 而近年以來, 科試太數, 年少學蔑之類, 莫不紛然而應舉. 今若罕設科而寢試

숙종 대 表文 위주의 출제 경향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서울 유생과 지방 유생의 합격자 편중 현상을 들 수 있다. 서울 유생들은 表文을 위주로 과거를 준비하는 반면 지방 유생들은 대부분 賦와 策을 위주로 과거를 준비하였다.⁶⁾ 과거시험에서 表文과 같은 사료문이 출제되면서 사료문에 익숙하지 못한 지방 유생들은 붓을 놓고 시험장을 나가버리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⁷⁾ 다음 문제점으로는 응시자들 가운데 科表類抄와 字類 등의 참고서를 활용하고 儷文選集類 등을 표절하여 요행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현상을 들 수 있다.⁸⁾

이와 함께 시험 시행 횟수의 증가에 따라 급증한 응시자들로 인해 실제 科場에서는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여러 폐단 가운데 영조 대부터 빈번하게 논의가 된 사안은 바로 呈上之弊이다. 呈上之弊는 응시자가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빨리 써서 서둘러 試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試官이 주로 빨리 제출된 試券의 허두 몇 줄만 읽고 점수를 매기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科次規例의 해이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잦은 시행과 응시자의 급증으로 정밀하게 점수를 매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⁹⁾ 呈上之弊는 현상으로 보면 科場에서 발생한 미미한 폐단에 지나지 않지만, 당대에는 呈上之弊가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었다.¹⁰⁾ 영조 대 조정지폐의 구체적인 정황은 白奎昌이 올

表, 則可以矯其弊矣.”

6) 『英祖實錄』 卽位年 11月 24日.

7) 『肅宗實錄』 16年 4月 3日. “大運又言‘設科之時, 每試四六. 外方舉子, 不閑儷語, 輒皆闌筆而出. 必試以策問然後, 可得人才.’”

8) 科表類抄와 字類에 대해서는 이상욱(2017), 174~178면을 참조. 이러한 현상은 사료문의 애호와 科表 위주의 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2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9) 김성진(1993), 249~251면.

10) 『日省錄』 正祖 8年 2月 13日. “校理權以綱上疏乞遞, 仍陳勉, 賜批. 疏略曰‘…<中

린 다음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前中部參奉 白奎昌이 상소하기를, “…<중략>…지금 선비라 불리는 자는 實地에 대하여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빨리 요행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새로 글을 배우는 선비가 作文의 방향을 대략만 알면 곧바로 선배들을 따라서 科場에 들어가 혹 선배들의 모양을 따라 형체를 모방하거나 혹 걸음을 뒤따르며 걸음걸이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남의 영민한 말을 빼앗고 남의 화려한 글을 도둑질하는 데 급급하여 오직 試券을 빨리 올리는 것만을 급선무로 삼습니다. 심한 자는 혹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모양과 색깔을 바꾸는데, 갑의 上段을 취하여 을의 中段에 잇고 을의 後段을 취하여 갑의 前段에 이어, 도둑질한 말로 문장을 완성하고 강탈한 글귀로 全篇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절마다 몰래 인용하거나 문장마다 주워 집고, 그렇지 않으면 전편을 모조리 베끼거나 반 이상을 잘라다 내용을 바꾸기를 주로 삼는데, 試官의 눈을 가리려고 또한 試券을 빨리 올리는 것을 급선무로 삼습니다.”¹¹⁾

위의 인용문은 白奎昌이 1734년(영조10) 時弊 7조목과 관련하여 올린 상소문 가운데 당대 科場에서의 폐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白奎昌은 당시 선비들은 빠른 방법으로 합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다른 사람의 글 가운데 뛰어난 구절과 문장을 도둑질하거나 試官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내용 배치만 바꿔 짜집기를 해서 글을 완성하기도 하며 심지어 전편을 모조

略>…四日正文體, 文體之註正, 實係世道之汚隆, 嚴飭掌試之臣, 寬其晷限, 盡其才識, 務取程式之文, 斥去浮華之體焉.”

- 11) 『承政院日記』英祖 10年 1月 11日. “前中部參奉白奎昌疏曰‘…<中略>…今之號爲士者, 不思實地之着工, 惟求捷徑之倖得, 新學之士, 粗知述作向方, 卽隨前輩入場, 或依樣而模形, 或追武而效步, 掠人之英, 竊人之華, 汲汲惟以早呈爲務. 甚者, 或移東易西, 幻貌變色, 取其甲者之上段, 以續乙者之中段, 取其乙者之後段, 以續甲者之前段, 偷襲成章, 戕賊就篇. 不然則句句而竊引, 章章而裒綴. 不然則沒謄全篇, 裁斷強半, 換客爲主, 欲掩主司之目, 亦以早呈爲務.’”

리 베껴서 試券을 빨리 제출하는 것만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呈上之弊는 영조 대 이후 정조 대 과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며, 영조 대에 본격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정조 대에 그 폐단이 더욱 심해졌고 순조 대까지도 그 병폐로 지속되었다.¹²⁾

2) 개선 방안과 한계점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종 연간부터 과거 시험의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科場 관리의 부실을 비롯한 과거 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특히 과거 시험 가운데에서도 庭試가 자주 시행되고 表文 위주의 선발 방식이 지속되면서 합격자가 表文 작성에 유리한 서유 유생들로 편중되는 현상이 심해졌으며, 응시자들 사이에서 科表類抄와 字類를 활용하여 작문하고 儷文選集類 등을 표절하여 試券을 작성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숙종 대와 영조 대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먼저 숙종 대에는 庭試의 잦은 시행과 表文 위주의 선발 방식으로 야기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庭試에 大輪次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1684년(숙종10)에 시행되었던 庭試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지방 유생들이 대거 상경하였다. 지방 유생들은 表文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試券을 작성하지 못하였고, 결국 백지로 試券을 제출한 응시자가 절반

12) 尹愔, 『無名子集』冊5, 『論科擧』. “行私之外, 又有取早之弊. 蓋主試者厭於始終之細閱, 只就暗標早呈者擢之, 而晚者則都置之落軸. 故爲士者自私習之時, 不顧其文之工拙精麤, 惟以急構爲主, 或於一日之內, 作七八首, 多者至過十首. 而無文筆者, 豫備速製速寫之手, 於其入場也, 忙忙寫出, 競欲先人, 甚至於以數三人合作一篇, 以數三人合寫一張, 期於呈得第一軸·第二軸, 不然則自以爲不善修人事. 其父兄與他人, 亦不問其文之如何, 惟問其呈之早晚, 以占得失. 如此而才安得自盡, 文安得爲文?”

을 넘었다. 당시 이 사안을 두고 숙종과 대신들 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金壽恒(1629~1689)은 大·小科를 시행한 후에 인재를 빠뜨릴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大輪次를 시행하여 覆試에 나갈 수 있도록 한 선례를 들어 大輪次를 시행하여 지방 유생들을 위로할 것을 건의하였고,¹³⁾ 그로 인해 성균관에서 賦를 출제하여 19명을 선발하였고, 이 중 3명에게는 直赴殿試의 자격을 주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인 대안에 지나지 않았다. 숙종 대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영조 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1728년(영조4)에 朴師洙가 당대 과거제도의 시정과 관련하여 올린 상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것이 이미 經學·才識이 있는 선비를 얻어서 다스림을 도와 이루지 못하고 한갓 黨人들이 권세를 얻어 뽑내고 원한을 갚는 밑거리가 될 뿐이니, 과거의 설행이 어찌 다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뒤로는 다시 單慶·合慶으로 증광을 설행하거나 별시를 庭試로 바꾸지 말고 모든 경사를 반드시 다 수차를 합치고 수년을 지내어 한 科試를 설행하되 大比와 서로 사이에 끼우며 별시에는 講經을 없애지 말고 駢儷文으로 시험하지 말 것이며 謁聖·春塘臺 등 임헌하는 과시 때에는 賦·表·論·箴·銘·頌으로 번갈아 출제하여 儒生이 오로지 한 가지 文體만 익히지 않게 하기를 신은 바랍니다.¹⁵⁾

13) 『肅宗實錄』 10年 9月 26日. “領議政金壽恒啓曰‘今番庭試時, 外方儒生, 聞將廣取, 上來者多, 入場之後, 鄉儒不閑駢儷, 率多曳白, 失望莫甚. 自前大小科後, 或慮遺才, 別設大輪次, 許赴會試, 趁此外方儒生未散之前, 分付成均館, 設行慰悅似宜. 左相之意亦然, 敢此仰稟’, 上曰‘大臣之言, 正合予意, 依此舉行.’”

14) 車美姬(1999), 110면.

15) 『英祖實錄』 4年 9月 4日. “判決事朴師洙上疏, 略曰‘…<中略>…噫! 國家取人, 既不能得經學·才識之士, 以輔成治理, 徒爲黨人輩招權報怨之資, 科舉之設, 豈但使然哉? 臣願自今以後, 勿復以單慶·合慶, 設增廣別試, 變爲庭試, 凡諸稱慶, 必皆合數次, 過

朴師洙는 이 상소에서 숙종 대 과거제의 폐단에 대해 언급하고 영조 당대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당대 과거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위의 인용문은 대안에 해당한다. 朴師洙가 제시한 대안은 크게 [1]單慶과 合慶으로 증광시를 시행하거나 별시를 庭試로 바꾸지 말 것, [2]별시에는 강경을 없애지 말고 사륙문으로 시험하지 말 것, [3]친림시에는 賦 · 表 · 論 · 箴 · 銘 · 頌으로 번갈아 문체를 출제하여 유생들이 한 가지 문체만을 익히게 하지 말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종 대에도 과거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적 차원의 개편이 시도되었으나 영조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제화된 시정이 이루어졌다. 1746년(영조22)에 『續大典』에 庭試도 별시와 마찬가지로 초시를 도입하여 초시와 전시의 두 단계로 시행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여¹⁶⁾ 시험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庭試 초시에서 賦와 表 두 문제로 내어 응시자들이 한 문제를 골라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균형을 꾀하였다.¹⁷⁾ 이후 1757년(영조35)에는 科弊釐正 綸音을 반포하여 謁聖試와 庭試와 같은 慶科의 시행을 줄이고 문과 급제자 숫자를 제한하는 등 숙종 대의 폐단을 시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764년(영조42)에는 科弊釐正 綸音을 반포한 지 7년 만에 영조는 科弊釐正 綸音의 大小科釐正節目을 폐지하고 舊規를 회복하기를 명하였다. 大小科釐正節目의 폐지 후 영조 대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거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¹⁸⁾

數年而設一試, 與大比相間, 別試勿除講經, 勿試駢儷, 謁聖 · 春塘臺臨軒之時, 以賦 · 表 · 論 · 箴 · 銘 · 頌, 交互出題, 俾儒生, 毋專習一文.”

16) 『續大典』 「禮典」 諸科.

17) 박현순(2014), 138면.

18) 科弊釐正 綸音의 반포와 시행 경위, 그리고 科弊釐正 綸音을 반포한 지 7년 만에 영조가 科弊釐正 綸音의 결과물인 大小科釐正節目을 폐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박현순

한편 영조 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早呈之弊와 관련한 문제는 1763년(영조 39)에 이르러서야 대안 모색과 시정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親臨하는 庭試와 謁聖試 이외의 모든 大科·小科의 初試와 會試에 시각을 정하여 시각이 되기 두 시간 전에 收券官을 불러서 들어오게 한 다음 바치라고 외친 뒤에 바치게 하며 바치라고 외치기 전에 試券을 바친 자는 시각 뒤의 예에 의거하여 거두어가지 말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엄중하게 지킬 것을 명하였다.¹⁹⁾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早呈之弊의 문제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91년(정조 15)에 이르러 정조 역시 禮曹에 명하여 科擧節目에 納券의 시한을 명시하는 절목을 마련하도록 명하였으나 早呈之弊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전 시기와 純祖 대 당대의 과거의 폐해와 그 대안을 제시한 尹愔(1741~1826)의 ‘과설 12조목[科說 十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폐단은 色目에 따라 분배함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중략〉… 또 科場의 만여 권의 試券에 유독 南人과 小北의 문장은 겨우 한두 장이 입격할 수 있고 과거 시험 때마다 이러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이는 지금의 試官이 사육을 따라 공도를 멸절시킨 것이 가장 뿌리 깊은 고질이고, 제일 먼저 제출한 자를 뽑고 색목으로 분배하는 것이 또 고치기 어려운 別症이 된다. 그런데 먼저 제출한 자를 뽑으면서 반드시 변명하기를 “나중 제출한 자를 뽑으면 문장의 두세 번째 등급이 모두 뽑히므로, 먼저 제출한 자를 뽑아 첫째 등급을 얻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니, 이는 본래 변론할 가치가 없

(2014), 145~158면에 자세하다.

19) 『英祖實錄』 39年 8月 26日. “上閱科場早呈之弊, 詢問諸臣. 命自今親臨庭謁聖外, 凡大小科初會試, 定時前期二時, 召收券官以入, 呼呈後乃呈, 呼呈前呈券者, 依限後例勿施. 五句以上純然雷同者, 勿論主客, 并置落科事, 嚴立科條.”

는 遁辭이다. 그런데 분배의 경우는 사욕을 행하는 중에도 한층 더 심각하여 교묘한 악행이 짝이 없고 마음의 심보가 더욱 참혹하다.²⁰⁾

‘과설 12조목[科說 十二]’은 尹愔가 노년에 작성한 글로 자신이 목도한 과거 시험의 문제점, 즉 試券 작성 과정의 각종 부정행위, 뇌물로 인한 試官의 비리행위, 엄격히 관리되지 못해 비리가 만연한 시험장, 일찍 제출한 試券만 채점하는 폐단,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試券 등의 사안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글이다. 위의 인용문은 12번째 항목인 ‘색목에 따라 분배함에 이르러 과거의 폐단이 극에 달하다[科擧之弊至於色目之分排而極矣]’ 중 일부분인데, 科擧에 私情이 개입되고 黨派와 관련된 정치적 입장이 작용하는 폐해를 여실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숙종·영조 대 과거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과거제로 인한 폐해가 단순히 제도적인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시행과 합격자 선발에 수시로 私情이 개입되었고, 과거 합격자의 배출과 관련한 당시 黨派의 정치적 입장이 작용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 역시 과거 시행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였다. 그 결과 이러한 개선 방안이 일시적인 대안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科場의 폐단을 줄이거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파생되는 과거와 관련된 폐해를 개혁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 尹愔, 『無名子集』冊11, 『科說十二』. “科擧之弊, 至於色目之分排而極矣. …〈中略〉… 且一場之中萬數之券, 獨南小之文, 纔有一二張, 可以入格. 而科科如此, 天下安有如許之理哉? 蓋今試官之徇私減公, 最是膏肓之根崇, 而取早也分排也, 又其別症之難醫者也. 然而取早則猶必爲之辭曰‘取晚則文之第二三手皆得參, 不若取早之可得初手.’ 此固遁辭之不足辨者. 而至於分排則行私之中, 又深一節, 而巧惡無比 用意尤酷.” 번역은 윤기 지음, 김채식 옮김(2014)을 참고하였다.

3.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한 논의와 쟁점

1)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

조선 후기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은 문체정책이 이루어졌던 정조 대가 아니라 숙종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숙종 8년(1682)에 올린 南九萬(1629~1711)의 啓辭에서는 이러한 科文의 변화 실태를 지적하며 科文의 정식을 지키지 않는 試券, 용어, 문장을 科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할 것을 촉구하였다.²¹⁾

知經筵 南九萬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試官들 사이에서 응시자들의 글을 보았는데 文體가 전에 비해 크게 변하였습니다. 보통 쓰는 文字들을 기필코 新奇하게 쓰려고 애써, 天淵이라 쓸 말이면 바꾸어 星淵이라 하였으니, 이는 별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인 것이고, 末世는 바꾸어 亥世라 하였으니, 亥가 地支의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繼此以後는 바꾸어서 胤茲以裔라 하고, 恭惟는 바꾸어 莊惟라 하였습니니다. 또 어려운 글자와 궁벽한 말로 문장을 엮어 만들어, 반드시 남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하였습니니다. 또 그 중에서는 많은 語錄을 섞어 쓰니, 常規에서 벗어난 기괴함을 따르려는 습성은 진실로 매우 놀랄 일입니다. 지난날에 姜弼周가 어록을 對策文에 썼다가 과거에 올랐고, 근일에 趙宗著도 科製에 기벽한 말들을 즐겨 써서 여러 차례 높은 등위에 들었습니다. 쩡그리는 것을 본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文體의 變易은 진실로 세상의 盛衰와 관계되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體裁는 불가불 엄히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 뜻을 中外에 알리시어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該曹에 명하여 科舉事目에 넣어서 중외에 반포하게 하였다.²²⁾

21) 이에 대해서는 김성진(1993), 258~259면에서 언급된 바 있다.

22) 『肅宗實錄』 8年 11月 25日. “知經筵南九萬曰‘臣頃忝試官, 見舉子之文, 則文體比前大變. 凡例用文字, 必務爲新奇. 若云天淵則變曰星淵, 以星之在天也, 末世則變曰亥世,

위의 글에서 南九萬은 응시자들이 어려운 글자와奇怪한 용어로 章句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못하도록 하고 語錄을 섞어 쓰는데 이는 反常趨怪의 풍습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체를 사용한 응시자들이 과거에서 실제 높은 등위에 들었던 실례를 들어 이러한 행태를 일체 금지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文體의 變易은 곧 세상의 盛衰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숙종은 南九萬이 간언한 科文에서 문체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科擧事目에 해당 조항을 마련하여 반포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숙종 31년(1705)에도 閔鎭遠(1664~1736)이 당시 응시자들이 科文의 정식을 무시하고 다른 문체를 사용하여 試券을 작성하는 일을 지적하면서 科擧事目에 넣어 科文의 정식을 무너트리는 일을 금지해야한다고 건의하였다.²³⁾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숙종 초기부터 科文의 문체 변화와 관련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科擧事目에 금지 조항으로 넣어 科文의 문체를 바로잡으려는 시

以亥居十二支之末也，繼此以後，則變曰胤茲以裔，恭惟則變曰莊惟。且以險字僻語，綴成章句，必欲使人不可解見。又於其間，多以語錄攙入，反常趨怪之習，誠甚可駭。向者姜弼周用語錄於對策而登第，近日趙宗著亦於科製，好用奇僻之語，屢居高等，效顰者漸多，以致如此。文體變易，實關世道之盛衰。如此體裁，不可不痛斥。請以此意，知委中外，使之一切禁斷。’上命該曹，添入科擧事目，頒布中外。”

- 23) 『肅宗實錄』31年 4月 2日. “參贊官閔鎭遠啓曰‘科場之文，自有程式，少違程式，有司黜之，例也。近來文體漸變，不有程式。昔年南九萬，爲大提學時，陳達於筵中，以爲疑似論·賦似詩，申飭嚴禁。蓋其時監試初試入格試券中，賦初頭，有君不見又不見等文字，疑初頭有曷嘗觀夫文字故也。今番監試覆試一所疑題，有曰聖人之相人，與相人之相人同歟，異歟？此雖曰出自『東萊博議』，而疑題用外家文字，係是創見，有非程式。而況以聖人與相人，比較優劣，似有欠於尊畏聖人之道，已極未安。且其優等入格之文起頭，引用『荀子』‘人相篇’云。四書疑之引用外家文字，曾所未見，而置之高等，前頭文體，必將大變，所關非細。此後則疑題及入格之文，勿用外家文字事，添入於科場事目，以爲定式施行之地何如？’上曰‘所達甚是。依此爲之。’鎭遠言‘頃日御題，有切願寧陵聖志遵之語，臣民孰不感悅？孝廟大志炳然，而以內修自強爲本，孜孜恤民，可法者非一。宜取覽其時日記，一一遵行。’上嘉納之。”

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는 숙종 36년에 일어났던 尹鳳九(1681~1767)의 試券에 관련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科擧事目에 금지 조항으로 넣어 과거의 정식에 위배되는 문체로 試券을 작성하는 일을 엄금한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1710년(숙종36)에 尹鳳九가 監試 一所의 終場에서 제출한 試券이 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가 작성한 試券의 격식이 문제가 되었다. 먼저 사간원에서 尹鳳九가 작성한 試券 전체가 科式에서 벗어나 보통 科文의 격식에 위배되며, 첫머리에는 심지어 ‘再拜敬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둔다면 科文의 程式이 점차 무너져 크게 문체를 바로잡아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尹鳳九를 削科하고 해당 試官은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²⁴⁾

사간원의 논핵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숙종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尹鳳九의 試券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는데, 숙종과 대신들은 사간원의 지적대로 尹鳳九의 試券이 科文의 정식에 전부 위배되며, ‘再拜敬悉’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語錄體를 많이 사용한 점은 科擧事目에 어긋나므로 削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²⁵⁾ 尹鳳九의 試券이 현전하

24) 『承政院日記』 肅宗 36年 4月 29日. “正言洪禹寧啓曰‘…<中略>…一代文體之正・變, 都在試院之所尙, 掌試之任, 可謂重矣. 近來試官, 全不選擇, 前後考取, 極其雜亂. 今番監試一所終場居首尹鳳九試文, 全脫科式, 大異常格. 篇首至有再拜敬悉等語, 此實前古所未有之文體. 掌試之官, 不但不爲黜去, 乃反置諸高等, 瞻聆俱駭, 人言藉藉. 此而置之, 不惟程式之漸乖, 大非正文體, 杜後弊之道. 請監試一所終場居首尹鳳九, 特爲拔去, 當該試官, 竝命罷職.’” 해당 기사는 『肅宗實錄』 36年 4月 29日에도 수록되어 있다.

25) 『承政院日記』 肅宗 36年 5月 6日. “上曰‘尹鳳九及忠清左道榜拔去事, 令該曹稟處矣, 大臣之意, 何如?’, 畵(李畵-인용자)曰‘一時文體, 由於科場取舍, 而尹鳳九之文愚再拜, 乃是規例之外, 拔去之論, 不知其非矣’, 昌集(金昌集-인용자)曰‘科文之不用語錄, 亦科場事目也, 而尹鳳九, 多用語錄矣.’”

지 않기 때문에 당대 科文의 격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문장으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영조와 신하들이 문제 삼고 있는 구절인 ‘再拜敬悉’·‘愚再拜’는 간찰에서 사용되는 투식어이다. 科文의 정식에 위배되고 형식적인 요소를 지키지 않은 試券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용납될 수 없었다. 결국 해당 試官은 파직되었고 尹鳳九는 해당 시험에서 削科되었으며, 이후 1714년(숙종40) 시행된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숙종 대에 문제가 되었던 科文의 격식과 문체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영조 대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는데, 다음 柳鼎茂(1679~미상)의 상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典籍 柳鼎茂가 상소하기를, “ …<중략>… 아, 文章은 작은 재주이니 국가의 治亂과는 관계가 없는 듯합니다만, 옛사람은 문장을 가지고 世道의 성쇠를 점쳤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科文의 문체로 논하자면, 쇠미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詩, 賦, 表, 箋을 짓는 사람들은 글을 전개하고 배치하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단의 촉박한 말을 하기에 힘쓰며, 기괴한 작법을 쓰고 멋진 구절을 따와 쓰니 둔후한 기상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인형극 무대에서 戎舞를 너울너울 추다가 머리를 흔들고 눈을 굴리며 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과 같으니, 방정맞고 간사하며 알고 경박한 자태는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科文을 업으로 삼는 자들은 무엇이 좋아서 그것을 애호하고, 지금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서 그것을 취한단 말입니까.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²⁶⁾

26) 『承政院日記』英祖 10年 2月 4日. “典籍柳鼎茂疏曰‘…<中略>…嗚呼, 文章小技也. 似無係於國家理亂, 而古人以文章, 卜世道之汚隆. 若以今日科文文體論之, 則衰末極矣. 今之爲詩賦表箋者, 全沒鋪敘排攤之法, 務爲標末促迫之語. 由徑從竇, 剽華剔實, 無渾厚之氣, 比如傀儡[傀儡]之場. 戎舞倖倖, 搖頭轉目, 眩惑瞻矚, 其佻巧儂薄之態, 有不忍正視者, 而今之業科文者, 有何好而嗜之, 今之爲主司者, 有何好而取之? 有識之寒心, 亦已久矣.’”

위의 글은 1734년(영조10)에 시무책 8조목을 조목별로 전달하는 전직 柳鼎茂의 상소 중 科文의 문체 변화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논한 내용이다. 柳鼎茂는 科文의 문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詩, 賦, 表, 箋의 격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작법 및 구절과 용어의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극론하였다. 그리고 科文에 있어 이러한 양상은 인형극의 무대에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는 행위라 비판하였다. 柳鼎茂의 말에 따르면 영조 대에도 科文의 정식과 격식을 무시한 채 기괴한 작법과 구절을 科文에 쓰는 행위는 지속되었고, 이러한 試券을 제출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肅宗·英祖대에 科文의 程式에 맞지 않게 試券을 작성하거나 科文의 문체에 맞지 않는 용어와 語錄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경계하였고, 심지어 科擧事目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試券을 작성하는 응시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기괴한 작법과 科文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들을 과감히 사용하였고, 試券의 채점을 담당했던 試官 역시 이를 용인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이들을 합격시켰다는 사실이다. 科文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식과 격식을 무시한 채 기괴한 작법과 구절을 科文에 쓰는 행위는 정조 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정조의 문제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²⁷⁾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선 후기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은 특정 시기에 국한해서 볼 사안이 아니다. 科文의 격식과 문체 변화와 관련한 논란은 문제정책이 이루어졌던 정조대가 아니라 숙종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 영조 대를 거쳐 정조 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숙종 대와 영조 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科文의 격식과

27) 이에 대해서는 김성진(1993), 259~265면 참조.

문체를 바로잡고 응시자의 기호에 따라 기괴한 작법과 용어를 쓰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행위가 유행처럼 점점 번져갔다. 이러한 현상은 科文의 격식과 문체 변화 역시 개성적이고 신기함을 추구했던 조선 후기 문풍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어 정식과 격식을 위배한 응시자를 처벌하고 이러한 응시자를 선발한 試官을 처벌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2) 四六文의 애호와 科表 위주의 선발

四六文은 4언과 6언의 구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의 대구를 사용하며, 평측, 압운 등으로 성음을 조화시키고 典故를 많이 사용하여 함축성을 살리며, 화려한 단어들을 구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²⁸⁾ 사료문은 주로 공사문서와 실용문에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그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어 科擧의 시험과목으로 편성되었다.²⁹⁾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表文의 수요가 요구되면서 선조 대에는 表文을 통한 선발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자연스레 과거시험의 여타 문체보다 表文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는 급제를 위해 表文 만을 습작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³⁰⁾ 조선 후기 특히 숙종 대에 과거에서 表文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庭試의 시행이 확대되면서 시험 과목으로 表文을 출제하는 경우가

28) 심경호(2007), 554~555면.

29) 조선시대 과거에서 사료문은 주로 表文의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表文은 文科 初試와 覆試의 中場과 殿試에서 시험보이는 문체였다. 주로 經典이나 중국과 조선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고사를 바탕으로 試題가 출제되었으며, 응시자들은 주로 試題의 出典이 되었던 故事를 활용하여 擬作을 하였다. 試題를 통해 응시자의 학습수준을 시험하고, 사료문 형식으로 작성되었던 試券은 응시자의 작문 능력을 시험할 수 있었기에 책문만큼 중요시되었다.

30) 정경주(2013), 120면 발췌요약.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 金在魯(1682~1759)와 金東弼(1678~1737)의 언급에서 表文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배경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金在魯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지나친 崇文의 폐단을 바로 잡고자 하여 과거를 설행할 때 간간이 각종 문체를 시험하셨습니다. …<중략>… 箴, 銘, 頌은 句數가 많지 않아 지어 올린 뒤에도 시간이 조금 이른 탓에 同接끼리 도와서 요행히 급제하는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駢儷文이 雕篆의 문체라고 하지만 表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人事에 밝고 속속들이 안 뒤에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表文에 능하다면 出身한 이후로 모든 公事와 관련된 문자 및 疏章과 啓辭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온갖 문체 가운데 유독 表文이 지극히 어렵기에 試官이 채점하여 낼 때에도 정밀하게 가리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자만이 또한 그 글을 채점하기 쉽습니다. 肅廟 때의 과거에 四六文을 오로지 숭상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策問은 간간히 출제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賦와 四字보다 낫지만, 오직 표 외에 다른 문체는 없습니다.” …<중략>… 金東弼이 아뢰기를, “表文은 문체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선비들이 오로지 사륙문을 익히니 글마다 잘 짓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임하는 선비들은 평상시에도 表文을 익힙니다.”³¹⁾

위의 인용문은 영조 12년(1736) 1월 15일 영조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당시 科場에서 출제되는 문체에 관해 논의한 내용이다. 金在魯는 숙종 대 과거시험에서 사륙문을 숭상하고 그 가운데 특히 表文을

31) 『承政院日記』英祖 12年 1月 15日. “在魯曰‘聖上臨御後, 欲矯文弊, 設科之際, 間試雜體…<中略>…蓋以箴·銘·頌句數不多, 製進之後, 日勢差早, 故所以同接相救, 而倖科多出矣. 至若駢儷之文, 雖曰雕篆之體, 而製表之人, 必人事明透然後, 能善作之, 既能於表, 則出身以後, 凡公事場文字及疏章啓辭, 亦能善爲之. 百文之中, 惟表爲極難, 而試官考出之際, 其能精擇, 而不眩者, 亦易於考他文, 肅廟朝科舉, 專尙四六者此也. 策問則間間出之, 猶勝於賦與四字, 而大抵惟表之外, 無他文矣’…<中略>…東弼曰‘表者, 文中極難做者, 故士子專習四六, 則每文善做, 是以臨科之儒, 常時無不習表矣.’”

중시한 이유는 表文이 문장을 짓는 능력의 척도가 되며, 表文의 난이도로 인해 채점 과정에서 試官의 私情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숙종 대 表文의 출제 빈도가 높아진 데에는 문장에 능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表文에 능숙한 사람은 관리로 등용된 이후에 사료문으로 작성되는 여러 종류의 공용문을 잘 작성하리라는 기대가 내재되어 있었다. 金東弼의 언급에서는 表文은 문체 가운데 가장 짓기 어려운 문체이지만, 숙종 대 表文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면서 응시자들이 평상시에 사료문을 익히고 수련했던 풍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재로와 김동필이 언급처럼 과거 시험에서 表文을 위주로 응시자를 선발함으로써 파생되는 순기능과는 달리 숙종 대 表文 위주의 선발은 科文의 문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대에 대제학을 역임했던 宋相琦(1657~1723)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제학 宋相琦가 상소하여 士習 · 文風의 폐단을 아뢰었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士習은 날로 무너지고 儒術은 점점 쇠미해지고 있으며, 문풍의 쇠퇴에 있어서도 심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뽑는 데에 오로지 駢儷를 숭상하므로, 선비로서 글을 조금 지을 줄 알면 곧 여기에 힘을 기울이니, 심지어 剽竊하고 답습하여 옛사람의 글 짓는 법을 따르기에 겨룰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선비들의 通患이지만, 또한 국가에서 그렇게 몰았기 때문입니다.”³²⁾

32) 『肅宗實錄』 31年 6月 29日. “大提學宋相琦, 疏陳士習 · 文風之弊. 略曰‘即今士習日壞, 儒術寢微, 至於文風之衰, 亦有甚焉. 國家取人, 專尙駢儷, 爲士者稍解綴文, 使用力於此, 甚至剽竊蹈襲, 不暇追古人之述作. 此固今日士子通患, 而亦緣朝家驅使之然也.’” 송상기가 올린 상소문의 전문은 송상기의 문집 『玉吾齋集』 卷8에 『辭大提學諸任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은 1705년(숙종 31년)에 대제학으로 재임 중이던 송상기가 올린 사직 상소문 가운데 당대 士翫과 문풍의 폐단을 언급한 내용이다. 송상기는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 가운데 오로지 사륙문만을 숭상하므로 응시자들이 사륙문 수련에 힘을 기울이지만, 문장을 표절하고 격식을 답습하여 옛사람의 글을 따라 쓰는데 여념이 없는 폐단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응시자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숙종과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았는데, 송상기의 올린 상소의 말미에 부기된 史官의 評을 통해 당대 사륙문의 애호와 그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수십 년 이래로 국가에서 사륙문으로 선비를 시험하였으므로, 선비들이 이에 힘쓸려 오직 문자를 베껴 적는 것만을 일삼고, 古文辭에 힘쓰는 자는 전혀 없었다. 조정의 신하가 이따금 이것을 말하였지만, 임금부터 또한 스스로 좋아하여 매번 이것으로 사람을 뽑았으므로, 송상기가 상소하여 언급한 것이다.³³⁾

史官의 評에서 알 수 있듯이 숙종 대 사륙문의 애호는 제도상의 요인 뿐 아니라 숙종의 사륙문에 애호 역시 응시자들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숙종 대 잦은 庭試의 시행으로 인한 表文 위주의 선발은 과거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儷文選集類에 대한 수요 급증과도 연관이 있다. 응시자들은 表文 위주로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위한 맞춤형 학습 전범을 필요로 하였는데, 18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儷文選集類의 증가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방증한다.³⁴⁾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사륙문의 기본적인 체제와 작문 연습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科表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試券에만 치중하여 表文을 익히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문장에 능한 사람들

33) 『肅宗實錄』 31年 6月 29日. “數十年來, 朝家以四六試士, 士子靡然, 惟以抄錄文字爲事, 用力於古文辭者絕無. 廷臣間以爲言, 而自上亦自好之, 每以此取人, 故相琦疏及之.”

34) 김광섭(2006), 79면.

가려내기 위한 애초 表文의 출제 취지와는 달리 科文 관련 類抄와 儼文選集類 등을 활용하여 표절과 모방을 일삼아 科表를 작성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료문의 애호로 인한 폐단은 숙종 대 뿐 아니라 영조 대까지 지속되었는데, 다음 李巨源(1685~1755)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李巨源이 아뢰기를, “…<중략>…근래에 科場에서 짓는 것을 문체를 가지고 나무랄 수 없지만, 한번 駢儼文이 성한 뒤로 더욱 불만한 문체가 없어졌습니다. 대개 駢儼文은 事大하는 문장이니, 참으로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독서하지 않은 자가 章句를 표절하는 것으로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처럼 거칠고 서툰 사람도 그것을 지어 과거에 합격하였습니다. 대우가 정묘하여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彙集이 따로 있어 금방 조합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먼 지방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表文을 짓는 데 불리한 것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로 인재를 취하는 것은 작은 방도인데, 작은 방도 안에서도 表文을 위주로 하는 것은 특히 작은 방도입니다. 과장의 문장은 원래 한 가지 문체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賦·表·箴·銘을 간간이 바꾸어 가며 출제하여 선비가 이번 과거에서 어떤 문체가 출제될지 알 수 없게 한다면 자연 본원에 힘쓰는 학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근래의 고질적인 폐단이므로, 마침 문체에 관한 말이 나온 김에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³⁵⁾

당시 侍讀官이었던 李巨源은 사료문이 사대에 필요한 문장이므로 그 필

35) 『承政院日記』英祖 卽位年 10月 29日. “巨源曰‘…<中略>…近來科場之作, 雖不可以文體責之, 而一自駢儼之盛後, 文體尤不足觀. 蓋駢儼之文, 卽是事大之文也, 固不可廢, 然其爲文也, 雖是不讀書之人, 剽竊章句, 足可優爲, 是故, 雖以如臣之魯莽, 亦嘗爲之, 至於決科矣. 對偶精妙, 見之似難, 而各有彙集, 片時衷合, 此所以遐方讀書之人, 嘗不利於表者也, 其弊誠不少矣. 夫科擧取人, 已是小道, 而小道之中, 以表爲主者, 尤爲小道矣. 科場之文, 元不可定以一體, 賦·表·箴·銘間互出, 使爲士者, 不知今科, 當出某文, 則自然爲務源之學, 此實近時痼弊, 故適因文體之言, 敢有所達矣.’”

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科文에서 사료문을 위주로 선발하면서 그 폐해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료문 가운데 表文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면서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科表 관련 彙集³⁶⁾을 통해 쉽게 익혀 표절만 일삼는 행태가 만연하였고, 요행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서적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응시자는 表文을 짓는데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賦·表·箴·銘 등 다양한 문체를 활용하여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적어도 영조 대 초기까지는 科文에서 表文을 애호하고 表文 위주로 합격자를 선발하던 방식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 대 역시 表文을 통한 선발방식은 지속되었으며, 응시자들 사이에서 科表類抄·字類·儷文選集類 등의 서적을 통해 쉽게 익혀 표절과 모방만을 일삼는 행태 역시 답습되었다. 물론 이전 시기처럼 과거에서 표면적으로 表文을 중시하였지만, 科文 관련 類抄와 儷文選集類를 통한 표절과 일부분만 완전한 형태로 試券을 제출하던 이전 시기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요구하는 완전된 형태의 表文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정조는 응시자들이 表文으로 합격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表文을 지을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현상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전처럼 表文을 중시하되 실제적이고 완전한 表文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초계문신들과 신하들에게 사료문 작성을 적극 권장하고 시험한 것이 그 일례이다.³⁷⁾

36) 李巨源이 언급한 ‘彙集’은 단순히 과거 용어 어휘집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科表類抄와 字類, 그리고 科文의 정식에서 모범이 될만한 작품을 선집한 작품모음집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37) 정조는 특히 초계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表文을 지속적으로 출제하여 사료문에 대한 제출능력을 요구하였으며, 사료문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行文으로 試券을 완성할지라도 白紙로 試券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명하였다. 『日省錄』 正祖 8年 6月 12日; 『日省錄』 正祖 14年 10月 3日; 『日省錄』 正祖 20年 12月 2日.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別試를 대체하여 庭試의 시행이 확대된 것은 제도상의 변화이지만, 제도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합격자의 선발 방식과 과제 문체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숙종 대부터 科文에서 表文을 중시하고 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로 인해 과거를 준비하는 응시자 사이에서 表文의 학습이 중시되었으며, 儷文選集類에 대한 수요와 편찬이 확대되었다. 물론 애초에 表文 위주의 선발은 문장한 능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표절과 모방의 답습 등 表文의 애호와 중시로 인한 폐단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科擧制의 변화가 단순히 제도상의 변화와 머물지 않고 科文의 문체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 정조 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한다. 이는 문체의 변화 양상 역시 조선 후기의 특정 시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숙종 대~정조 대에 걸쳐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4. 나가며

본고는 조선 후기 科擧制에서 肅宗·英祖代 科擧制의 推移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한 논의와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고찰하여 당대 科文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을 밝히고 그 推移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肅宗·英祖代 科擧制의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은 숙종 대부터 과거 시험의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科場 관리의 부실 및 과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폐해가 극심해졌다. 특히 숙종 대에는 庭試가 자주 시행되면서 表文 작성에 유리한 서술 유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는 한편, 表文의 빈번한 출제로 인해 응시자들이 科文 관련 類抄와 儷文選集類의 학습에 몰두하여 표절하고 답습하는 폐단

이 심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종 대와 영조 대에는 과거제와 관련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일정 부분은 科擧事目에도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肅宗·英祖代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련한 논의와 그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크게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과 사료문의 애호와 科表 위주의 선발로 인한 논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 후기 科文의 격식과 문체에 대한 논란은 문체정책이 이루어졌던 정조 대가 아니라 숙종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영조 대를 거쳐 정조 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肅宗·英祖代에는 科文의 程式에 맞지 않는 試券을 작성하거나 科文의 문체에 맞지 않는 용어와 語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科擧事目에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科文의 격식과 문체를 바로잡고 응시자의 기호에 따라 기괴한 작법과 용어를 쓰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科文의 격식과 문체 변화 역시 개성적이고 신기함을 추구했던 조선 후기 文風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그러므로 科文의 정식과 격식을 위배한 응시자를 처벌하고 이러한 응시자를 선발한 試官을 처벌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別試를 대체한 庭試 시행의 확대는 제도상의 변화 뿐 아니라 합격자의 선발 방식과 科文 문체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숙종 대부터 科文에서 表文을 중시하고 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로 인해 과거를 준비하는 응시자 사이에서 表文의 학습이 중시되었으며, 儷文選集類에 대한 수요와 편찬이 확대되었다. 애초에 表文 위주의 선발은 문장에 능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표절과 모방의 답습 등 表文의 애호와 중시로 인한 폐단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科擧制의 변화가 단순히 제도상

의 변화와 머물지 않고 科文의 문체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방증한다.

본고에서는 肅宗·英祖代 과거제와 科文의 추이와 그 양상을 살펴보는 데 치중하여 당대 文風과 문단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續大典』

尹愔, 『無名子集』, 韓國文集叢刊 257.

2. DB 및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DB (<http://sjw.history.go.k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3. 논문 및 단행본

박현순(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심경호(2007), 『한학연구입문』, 황소자리.

車美姬(1999), 『朝鮮時代 文科制度研究』, 國學資料院.

윤기 지음, 김채식 옮김(2014), 『무명자집』 권1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광섭(2006), 「17~18세기 '려문선집' 류의 편찬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하여: 서유체 변려문의 애호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77~102면.

김성진(1993), 「正祖年間 科文의 文體變化와 文體反正」, 『한국한문학연구』 16, 한국한문학회, 247~279면.

이상욱(2017),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회』 53, 대동한문학회, 159~193면.

정경주(2013),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83~125면.

〈Abstract〉

A Study on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exam writing(科文) Trends During King Sukjong(肅宗) and
King Yeongjo(英祖) Periods

Park, Seon-y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制) during King Sukjong(肅宗) and King Yeongjo(英祖) Periods, explore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on standard format and literary style in exam writing, clarify the key points in controversies over exam writing, and investigate on the trends.

First, noteworthy points in the flow of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during King Sukjong(肅宗) and King Yeongjo(英祖) periods are that number of applicant rapidly increased in response to expansion of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since King Sukjong(肅宗) periods. This resulted in lack of management on examination places and issues occurring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Especially, Jeongsi(庭試) was often held during King Sukjong(肅宗) period and scholars from Seoul were more likely to pass the examination because they were more advantageous in Pyomun(表文). Meanwhile, as applicants were often asked to Pyomun(表文), the applicants immersed into studying collections and selections of parallel style writings(儷文選集類) ended up plagiarizing and imitating them. To solve such issue, there were attempts to find solutions for issues related to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during King Sukjong(肅宗) and King Yeongjo(英祖) periods and part of those attempts were reflected on Gwa Geo Sa Mok(科擧事目).

* Doctor's course completion, Major in Classical Chines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 dudu0218@naver.com

Also, the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on the standard format(程式) and literary style for exam writing are largely summarized into controversies over systems and formality of exam writing and controversies on preference toward four-six prose style writing and selection focusing on Gwapyo(科表). The controversies over systems and formality of exam writing during late Joseon Dynasty didn't start from the King Jeongjo period when literature policy started. Instead, such controversies started from King Sukjong(肅宗) period, affected on King Yeongjo(英祖) period, and lasted until King Jeongjo(正祖) period continuously. During King Sukjong(肅宗) and King Yeongjo(英祖) periods, not complying with the standard format of exam writing or using the terms and quotations(語錄)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literary style of exam writing were prohibited. These were applied on Gwa Geo Sa Mok(科舉事目) to correct the system and formality in the state level and regulate applicants from using awkward writing technique or terms for preference of applicants. Nevertheless, such attempts were not effective. Such phenomenon was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literary sty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pursued individuality and novelty in exam writing system, formality, and literary style. Therefore, such controversies could not be solved in the institutional level by punishing the applicants who didn't comply with the standard format or formality of exam writing and punishing the civil officer who selected such applicants.

In addition, expansion of Jeongsi(庭試) that replaced Byeolsi(別試) in the late Joseon Dynasty not only brought institutional changes but also had a huge influence on method of selecting winners and changes in exam writing. The phenomena of valuing and preferring memorials to throne became remarkable starting from King Sukjong(肅宗) period. As a result, applicants focused on learning how to Pyomun(表文) and the demand and compilation of selections on parallel style writings. Although selection of applicants focusing on writing the memorials to throne started as a good intention for finding applicants proficient in writing, there existed considerable issues due to preference and focus toward memorials to throne under the form of plagiarism and imitation in the last Joseon

Dynasty. These facts proved that the changes in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not only brought institutional changes but also influenced on literary style of exam writing.

Key words : King Sukjong(肅宗), King Yeongjo(英祖), Civil Service Examination (科擧), exam writing(科文), gwapyo(科表)

본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4일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19일 게재를 확정하였음.